



정보화사회와 윤리

- 성신여자대학교 김도형 @ IT학부 -



제8장 저작권 침해

- 저작권의 이해
- 저작권의 발생 및 제한 사항
- 저작권 침해 및 실태
- 저작권 침해의 대응방안
-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
- 인터넷과 저작권, 새로운 움직임

저작권의 이해 (1/25)

- '저작자(著作者)'란?
 -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저작물을 만든 자로서, '자연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들)을 저작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저작권법 제8조).
- 저작권법 제8조
 - ①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②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저작권의 이해 (2/25)

- '저작물'이란?
 -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
 - 저작물을 담고 있는 책이나 디스켓, 악보와 같은 외형적인 재산에 담겨져 있는 무형의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
 - 저작권법 제2조(저작물의 정의) 제1호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과거)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현재)
- ∴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등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문학이나 학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저작물로 인정하는 등 저작물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

저작권의 이해 (3/25)

- 저작물의 요건
 - 지적이고 문화적인 포괄 개념에 속하면 됨
 -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면 창작성 인정
- 저작권법 상 독창성(originality)
 - 타인의 것을 베낀(copy) 것이 아니라는 소극적 개념
 - 색채·언어 등에 의해 외부로 표현됨으로써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

저작권의 이해 (4/25)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상'이 아닌 '표현'에 있다는 저작권법 상의 대원칙
 - 따라서 타인의 기계제작방법에 관한 논문을 도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논문에 나온 방법대로 기계를 제작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의 이해 (5/25)

- 저작물의 종류(저작권법 제4조 제1항)
 -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의 이해 (6/25)

-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 단순한 표어나 슬로건(slogan),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제호(題號) 등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제호의 경우 저작물의 일부라기보다는 그 저작물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호를 보호할 것인지는 각국마다 다름
 -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미국 등과 같이 저작물성을 불인정

저작권의 이해 (7/25)

- 음악저작물
 - 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 악기에 의한 것이든 육성에 의한 것이든 표현방식은 어떠한 것도 무방
 - 가사도 수반하는 경우 음악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의 양쪽에 해당
 - 음의 표현이 악보 등에 고정될 필요는 없어 즉흥연주도 저작물로서 보호가 될 수 있음
 - 구전으로 전승되어온 민요 등을 적절한 연주가 가능하도록 독창적인 방식으로 채보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는 없음

저작권의 이해 (8/25)

- 연극저작물

- 연극, 무용, 판토마임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을 동적으로 표현한 것
- 연극 중 각본은 어문저작물에 속할 것이며, 연기 자체는 실연으로서 저작인접물로서 보호 받기 때문에 연극저작물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연기의 형태로서 구성되어 있는 안무(choreography)
- 연극저작물도 고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즉흥연기나 무용도 저작물로 성립

저작권의 이해 (9/25)

- 미술저작물
 - 형사 또는 색채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에도 무대장치, 만화, 삽화 등도 포함
 - 미술저작물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용용 미술과 관련된 것

저작권의 이해 (10/25)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가 포함
 - 건축물에 있어서 창문이나 문 등의 개개의 구성요소는 건축 저작물로서 보호 받지 못함
 - 건축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부분은 그 전체적인 디자인이고, 창작성은 그 자체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개의 구성요소를 미적으로 선택하여 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을 제작함

저작권의 이해 (11/25)

- 사진저작물
 - 일정한 영상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로서 '일정한 영상'을 표현매체로 한다는 점에서 영상저작물과, '기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미술저작물과 각각 구별됨

저작권의 이해 (12/25)

-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등으로 재생할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서로 관련된 연속적인 영상으로 구성

저작권의 이해 (13/25)

-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의 창작성

저작권의 이해 (14/25)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2)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저작권에 의한 보호방식을 채택
- 우리나라는 저작권 보호방식을 취하기는 하나, 저작권법과는 별도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여 보호



프로그램 작성중의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평가

저작권의 이해 (15/25)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2)

- 소프트웨어 보호의 방식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
- 현재 S/W의 보호방식으로서 국제조약과 각국의 입법례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저작권법 체계에 따른 보호
- WTO/TRIPs 협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은 원시코드와 목적코드를 불문하고 [베른협약](#) 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한다고 규정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무역자유화를 위해 국제무역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구

※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상이);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 공중보건 및 영양 등 지적재산권 자체가 사회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술 및 교역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예외를 허용; 1996년 1월부터 시행

저작권의 이해 (16/25)

- 특수한 저작물의 종류 - 2차적 저작물
 - 소설을 영화화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로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음
 - 번역, 편곡, 각색 및 영상 제작 등의 방법
 -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함
 -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함

저작권의 이해 (17/25)

- 특수한 저작물의 종류 - 편집 저작물
 - 개별 소재의 저작물성과 상관없이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과 배열로서 이루어지는 편집물은 개개 저작물과 별도로 그 전체가 독립한 저작물로 보호
 - 백과사전,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등이 이에 해당
 - 종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체계적 구성 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 보호하였음
 -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인정요건으로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함
 -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편집저작물로 보호

저작권의 이해 (18/25)

-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
 - 사회공공 이익의 견지에서 특정한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음
 - 유형(저작권법 제7조)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저작권의 이해 (19/25)

- 저작권이란?
 - 저작권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구분

- ※ 저작인접권

저작권의 이해 (20/25)

- 저작재산권이란?
 - 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인격권과 달리 자유롭게 양도 및 제한이 가능

저작권의 이해 (21/25)

-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이란?
 - 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인격권과 달리 자유롭게 양도 및 제한이 가능

저작권의 이해 (22/25)

- 저작재산권의 종류
 -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 공연권: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 방송권: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
 -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 배포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 대여권: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여할 권리(대가의 수수여부와 상관없음)
 - 전송권: 저작물을 정보통신망 등에 전송할 권리
 -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저작권의 이해 (23/25)

-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이란?
 - 저작자의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금전적인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포함되는데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인 권리
- ※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친권(親權)

저작권의 이해 (24/25)

- 저작인격권의 종류
 - 공표권
 -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창작자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이해 (25/25)

-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이란?
 - 영화배우, 음반 또는 영화제작자 등의 권리
 - 저작권에 이웃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으로 실연자(實演者)가 가지는 복제·방송의 독점권과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복제·배포권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하는 자를,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저작권의 발생 및 제한 (1/3)

- 저작권의 발생 또는 등록
 -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 따라 무방식주의 채택
- ※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입장이나 제도의 한 가지로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취득 및 행사에 있어서 그 어떤 형식요건이나 등록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것; 베른협약이 이것을 채택하고 있음

저작권의 발생 및 제한 (2/3)

-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까지
 -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보호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으로 규정

저작권의 발생 및 제한 (3/3)

- 저작권의 제한(저작권법 제23조~제36조)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공개적 연설 등에서의 이용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저작권 침해 및 실태 (1/3)

- 저작권 침해란?
 - 저작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때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저작권 침해 및 실태 (2/3)

- 저작권 침해의 유형

- 저작재산권의 침해: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 또는 주요 부품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함으로써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상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경우(저작권법 제124조)
- 저작인격권의 침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저작권법 제124조 제4항)
- 출판권의 침해: 복제권자와의 사이에 출판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출판권자 이외의 자가 당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출판하는 것은 출판권침해가 된다.
- 저작인접권의 침해: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실연·레코드 및 방송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인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 및 실태 (3/3)

-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저작권법의 조항	내용
제124조 제1항 제1호	수입시에 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침해로 될 물건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제124조 제1항 제2호	저작권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제124조 제2항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124조 제3항 제1호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124조 제3항 제2호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의 대응방안 (1/3)

- 형사 구제절차(벌칙)
 -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를 병과
 - 저작권침해의 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임(저작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 고소해야)

저작권 침해의 대응방안 (2/3)

- 민사 구제절차
 - 침해금지청구
 -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
 -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 필요한 조치의 청구
 - 손해배상제도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저작권자가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

저작권 침해의 대응방안 (3/3)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 소송에 의한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
 - 종류: 중재, 조정, 알선
 - 장점: 신속, 저렴, 비공개
 -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기관
 - 일반저작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조정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는 재판상 화해
 -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 (1/3)

- 침해로 보는 유형 - 1
 - 수입 시에 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침해로 될 물건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 (2/3)

- 침해로 보는 유형 - 2
 -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 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 하는 행위
 -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 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 (3/3)

- 홍보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게시한 풍경사진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05.7.22. 2005나3518사건)
 - 원고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국내 자연풍경을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사진집으로 출간하는, 홍보 목적으로 무단 복제를 금하는 문구를 달아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하였다. 한편, 국내 모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는 2003년 8월~9월경 동료 직원의 소개로 원고의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원고가 게시한 풍경사진들을 감상하다가 나중에 다시 감상하고픈 생각에 사진들 중 13장을 복제한 다음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두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해놓은 자신의 사진들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을 알고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진들은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승낙도 없이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원고의 사진들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위 사진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인터넷과 저작권, 새로운 움직임 (1/4)

- 인터넷의 특성
 - 신속성(data transmission at light speed)
 - 익명성(anonymouslyness)
 - 복사성(ease of copying)
 - 효율성(efficiency or effectiveness of acting)
 - 국제성(no limit in space and time)
- ⇒ 저작권 침해가 죄의식 없이 쉽사리 발생

인터넷과 저작권, 새로운 움직임 (2/4)

- 관련 시사/기술 용어 (1/2)

- P2P

- 'Peer to Peer' = '개인 대 개인'
 -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컴퓨터 사이에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을 지칭

- DivX

- Circuit City의 DIVX(Digital Video Express)를 패러디하여 탄생
 - DIVX = disposable movie disk = "[One of the 25 Worst Tech Products of All Time](#)"
 - CD 1~2장 분량으로 DVD와 유사한 수준의 화질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한 코덱(codec)
 - Jerome Rota와 Max Morice란 해커들에 의해 MS의 MPEG-4v3 코덱을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기법으로 해독하여 만들어짐 = DivX ;-)
3.11 Alpha 코덱

인터넷과 저작권, 새로운 움직임 (3/4)

- 관련 시사/기술 용어 (2/2)

- 코덱

- Codec = coder(음성 또는 영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많은 경우 용량이 큰 파일을 작게 만듦) + decoder(디지털 신호를 음성 또는 영상 신호로 변환; 많은 경우 작게 묶어진 파일을 본래대로 회복함)

- 와레즈(warez) 사이트

- 프로그램의 복사방지 장치나 등록 장치, 셰어웨어(shareware)의 시간제한 등을 풀어서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소프트웨어
 - 어원
 - "Where is it?"의 구어체적 발음 표기
 - "-ware"의 복수형인 "-wares"를 변형시켜 표기
 - 정품 소프트웨어의 불법 배포,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 음악 파일, 영화 동영상이, 음란물을 제공

인터넷과 저작권, 새로운 움직임 (4/4)

- Copyright vs Copyleft
 - Copyright = 저작권, 지적재산권
 - Copyleft = 저작공유권, 지적공유권
 -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
 -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 1984년 전세계 해커들의 대부 [Richard Stallman](#)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 Stallman은 이후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을 설립
 - [GNU 선언문](#): "소프트웨어는 공유되어야 하며, 프로그래머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 핀란드의 대학원생이었던 [Linus Torvalds](#)의 공개 운영체제인 [Linux](#)를 발표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음; 이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권의 공유 운동으로 확대됨
 - 기업들도 저작권 보호를 고집하지 않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생김